

의안번호	2212255
의 회 인	윤준병 의원
회 답 일	2025. 12. 29.
추계번호	25A4459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71조제1항 (기금의 투자 등)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¹⁾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자금을 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벤처투자를 하거나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 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음 * 투자 및 출자 가능 법정기금을 전체 기금으로 확대 -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 (개정안)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 * 법정기금의 투자 및 출자 한도를 확대하여 법률에 명시 -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 ⇒ 기금 운용자금의 10% 이내 - (개정안)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등 근거 규정
1	안 제71조제1항 (기금의 투자 등)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1) 「국가재정법」

제5조(기금의 설치) ①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벤처투자와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이하 “투자·출자”)가 가능한 법정기금을 「국가재정법」 상 기금 전체로 확대하고, 투자·출자 한도 또한 기금 운용자금의 10% 이내에서 15% 이내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시행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수반될 것으로 예상
 - (현행) 44개 기금 → (개정안) 67개 기금
 - * [참고자료] 개정안에 따라 투자·출자 재원으로 추가되는 법정기금
- 추가재정소요는 ①현행법상 투자·출자가 가능한 법정기금(이하 “기존 기금”)의 투자·출자 확대액과 ②개정안에 따라 투자·출자가 가능하게 되는 법정기금(이하 “신규기금”)의 신규 투자·출자액을 합산한 후 원금 및 수익금 회수에 따른 수입을 차감하여 추계할 수 있으나, 기존기금 및 신규기금의 투자·출자 규모와 이에 따른 수익률, 자금의 회수 시점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으므로 소요 비용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기존기금 및 신규기금의 투자·출자액은 기금 운용자금의 15% 한도에서 각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규모와 방법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기금마다 재정 여건과 여유자금의 보유 수준 및 운용 방침 등이 상이하어 이를 일률적으로 가정하여 소요 비용을 추계할 수 없음
 - 원금 및 수익금 회수액은 투자·출자 대상 벤처기업 및 벤처투자조합 등의 운영 실적과 투자 기간,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기금별 자금 운용의 기준과 투자 및 회수 스케줄 등을 합리적으로 가정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이에 투자·출자 등이 가능한 법정기금의 범위와 투자·출자 한도를 확대하는 데 따른 추가재정소요(순 재정부담)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김효진	권아영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효진	02-6788-4654	hjkim1991@na.go.kr

[참고자료] 개정안에 따라 투자·출자 재원으로 추가되는 법정기금

법정 기금	개정안에 따라 투자·출자 재원으로 추가되는 법정기금(○)
총 67개	23개
사회보험성기금(6개)	
고용보험기금	
공무원연금기금	
국민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금융성기금(8개)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무역보험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계정성기금(5개)	
공공자금관리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
복권기금	○
양곡증권정리기금	
외국환평형기금	
사업성기금(48개)	
과학기술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법정 기금		개정안에 따라 투자·출자 재원으로 추가되는 법정기금(○)
	국가유산보호기금	○
	국민건강증진기금	
	주택도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국유재산관리기금	○
	국제교류기금	○
	군인복지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금강수계관리기금	○
	기후대응기금	○
	낙동강수계관리기금	○
	남북협력기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
	농지관리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
	방송통신발전기금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보훈기금	
	사범서비스진흥기금	○
	사학진흥기금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
	석면피해구제기금	○

법정 기금		개정안에 따라 투자·출자 재원으로 추가되는 법정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수산발전기금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
	언론진흥기금	○
	양성평등기금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
	영화발전기금	○
	원자력기금	
	응급의료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
	청소년육성기금	
	축산발전기금	
	한강수계관리기금	